

FTA BRIEF

'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Vol. 06
August 2025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 FTA 활용률 통계 산출
- FTA 관세율 정보 제공
-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 FTA 협상 지원
- FTA 정책 지원정보
-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5년 9월 5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4 by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사진 출처 : Freepik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 대상 품목은 미국 정부가 8월 18일(미 동부 시간 00:01)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 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철강·알루미늄)의 부과세율은 50%이며,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 해당 자료는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FTA 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글_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1. 들어가며



미국은 2025년 8월 7일 행정명령 제14326호를 통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발효하며 기존 관세 체계에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더하는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공식화했다.

‘국가별 관세’는 4월 2일 행정명령 제14257호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공식 서한을 발송한 이후, 상호관세는 국가별 협상을 거쳐 기존 관세 체계에 추가되는 개념의 관세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별 관세 발효로 보호주의 색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

고관세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중국 관세율이 최대의 관심사였으나, 미-중 양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별 관세는 한국, EU 및 일본 등을 포함한 69개 경제주체(68개국+EU)를 중심으로 발효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조치는 8월 11일 다시 유예¹⁾(~11월 10일)되었다.

국가별 관세 유예기간 동안 진행된 주요국과의 협상 핵심은 ‘對미 투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 미국산 승용차·트럭 및 농산물 개방(Open to Trad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는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통해 관세율 15%로 조정 및 발효되었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이어, 8월 1일부터 반제품 구리와 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추가되었다. 특히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407개 품목이 더해지며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32조 품목별 관세는 미국 산업계 요청과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 실제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요청에 따른 파생상품 추가 절차는 매년 1월,

1) 미국 연방관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상호관세율 추가수정」, 행정명령 제14334호, 2025.08.11.

2)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Section 232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검색일: 2025.08.14.)

5월, 9월 세 차례 정례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과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뿐 아니라 반도체, 목재, 의약품, 광물자원, 항공기, 폴리실리콘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²⁾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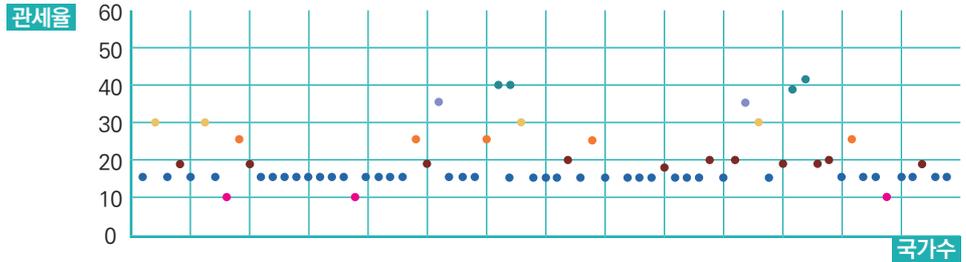
이에 본 고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 제14326호를 중심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신규 행정명령 (제14326호), 환적 적발시강경조치규정



美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4326호 부속서 I를 통해 발표된 국가별 부과 세율을 보면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 중, 한국과 EU 및 일본을 포함해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제주체가 4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10%의 국가별 관세가 적용된다.

③ ‘상호관세’ 국가별 부과 현황³⁾



세율	경제주체	국가명	비고
41%	1	시리아	
40%	2	라오스, 미얀마	아세안 회원국
39%	1	스위스	
35%	2	세르비아, 이라크	
30%	4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알제리	
25%	5	몰도바, 브루나이 , 카자흐스탄, 튀니지, 인도 ⁴⁾	아세안 회원국
20%	4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 스리랑카	아세안 회원국
19%	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아세안 회원국
18%	1	니카라과	
15%	40	가나, 가이아나,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콰도르, 요르단, 우간다, 일본 ,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르키예,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EU	일본 - MFN 관련 발표 없음 (ex-자동차 관세) EU ① MFN 15% 이상 품목 → MFN 적용 ② MFN 15% 미만 품목 → 15% 적용
10%	3	브라질⁵⁾ , 영국, 포클랜드 제도	브라질 - 특정 품목에 40% 추가, 총 50%
소계	69개		

© 자료 출처 : Federal Register(2025) 기반 재구성

3) 미국 연방관보, 「상호관세율 추가수정」,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07.31.

4) 인도는 상호관세 25%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9호에 따라 25%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5) 브라질은 상호관세 10%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3호에 따라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부속서 1에 명시된 아세안 9개국의 관세율은 평균 세율 24.4%로 확인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19%, 베트남은 20%, 브루나이는 25%, 라오스와 미얀마는 40%를 적용받는다. 이는 중국산 물품의 아세안 경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명령 제14326호는 기존에 없던 제3조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Transshipment) 조항을 추가하여 적발 시의 강력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적발 시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세금·부과금까지 적용되어 감경 및 면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CBP는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와 시설 목록을 공개해 정부 조달, 안보, 상업 심사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 주요국 협상 결과와 FTA 활용 필요성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對미 시장경쟁 환경을 확보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미국의 FTA 체약상대국이란 지위를 감안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주요국 對미 협상 내용과 결과

구분		한국 ⁶⁾	EU ⁷⁾	일본 ⁸⁾	비고						
경제 개요	2024 GDP*	1.87조 달러	19.41조 달러	4.26조 달러	GDP 규모 비교 한국 : EU : 일본 1 : 10 : 2						
	2024 무역수지 (미국 기준)	-660억 달러	-2,356억 달러	-685억 달러							
국가별 협상 내용		3,500억 달러 투자 (조선 포함)	6,000억 달러 투자 (3년간)	5,500억 달러 투자 (이익 배분) 일1 : 미9	투자액(단위 : 조 달러) <table border="1"><tr><td>한국</td><td>EU</td><td>일본</td></tr><tr><td>0.45</td><td>1.35</td><td>0.55</td></tr></table>	한국	EU	일본	0.45	1.35	0.55
	한국	EU	일본								
	0.45	1.35	0.55								
	미국 에너지(LNG) 1,000억 달러 구매	미국 에너지(LNG) 7,500억 달러 구매	-	GDP 대비 투자 비율(%) <table border="1"><tr><td>한국</td><td>EU</td><td>일본</td></tr><tr><td>24.0</td><td>6.95</td><td>12.9</td></tr></table>	한국	EU	일본	24.0	6.95	12.9	
한국	EU	일본									
24.0	6.95	12.9									
	완성차, 농산물 수용	의약품 15%, 원산지 협력 등	완성차, 농산물, 군수물자, 항공기 등	-							
협상 쟁점	투자 운용	투자 운용, 철강 관세 조정	완성차 MFN 적용, 투자 운용	-							
미국과 FTA 체결	한-미 FTA	없음	없음	한국만 FTA 체결							
IEEPA 국가별 관세 (8월 7일 이후)		15%	15% (MFN 포함)		-						
제232조 품목별 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15% (25%→15%)	15%(MFN 포함) (25%→15%)		완성차 세율 비교 -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한-미 FTA 활용) : 0% → 15% EU·일본(FTA 미체결) : 2.5% → 15%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최혜국 대우	최대 15% (MFN 포함)	최혜국 대우	한국 미발표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IMF WEO 2024년 명목 GDP 인용(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어 물가 변동이 반영된 GDP)

6) 도널드 J. 트럼프, 「Truth Social 게시물: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합의」, 2025.07.31.

7) 백악관,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2025.08.21.

8) 백악관,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2025.09.04.

‘트럼프 관세’ 이전 한국은 한-미 FTA를 활용한 완성차 수출 시 협정세율이 0%였지만, 이번 협상으로 15%의 자동차 관세가 추가되면서 기존 MFN이 2.5%였던 EU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여기에 한국은 GDP 대비 24% 규모의 對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EU(6.95%)에 일본(12.9%)에 비해 높은 투자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FTA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FTA의 실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냉동 김밥’⁹⁾은 HS 제1904.90호로 분류되어, 미국 기준 기본세율(General) 14%이지만 한-미 FTA 활용 시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어 14%의 활용 실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 14%에 국가별(상호관세) 세율 15%가 더해져 총 29%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FTA가 여전히 유효한 통상 수단임을 보여준다.

● ‘트럼프 관세’ 시대, 한-미 FTA의 실효성 예시

구분	기간	① 기존 관세		② 상호관세	FTA 활용 여부	최종 관세율 (① + ②)
		기본세율	FTA 세율			
냉동 김밥 (HS 1904.90) 	08.07.~	14%	0%	15%	활용	15%
					미활용	29%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IMF WEO 2024년 명목 GDP 인용(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어 물가 변동이 반영된 GDP)

결국 ‘트럼프 관세’가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약점인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¹⁰⁾를 흔들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에는 원재료를 포함한 중간재 수입 다변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FTA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인 만큼, FTA를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현황



‘트럼프 관세’가 한국 제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파생상품 관세는 함량 가치에 50%, 비함량 가치에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더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9)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사무관, 「미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 사항」,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발표 자료, 코트라(서울), 2025.08.13.

10) 정성훈,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KDI FOCUS vol 142, 2025.07.01.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부과 현황

구분	원산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기존 관세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파생상품	한국	50%			15%	
	중국		20%	10% (+24% 유예중)		
	베트남				20%	
	캐나다		USMCA 총속			
	멕시코		USMCA 미총속	캐나다	35%	
			멕시코	25%		

‘트럼프 관세’ 부과 구조 = 함량 가치 관세 + 비함량 가치 관세

기존 관세 + 제301조 + AD/CVD

↓

지속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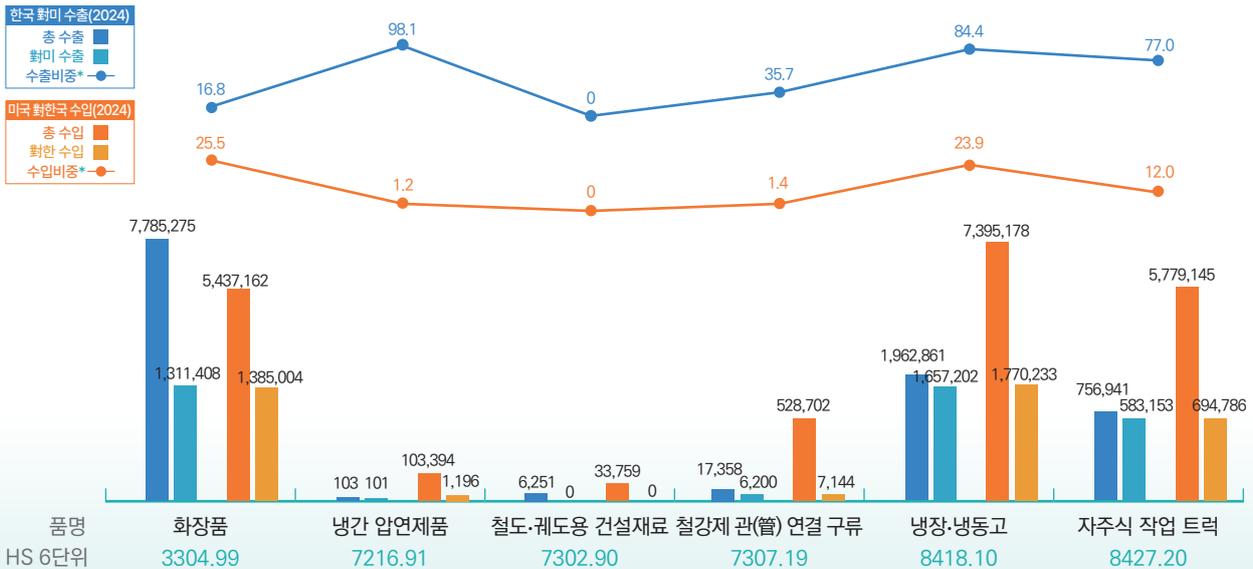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되고, ② 한국산 물품은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와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가 합산되어 부과된다. ③ 중국산 물품은 함량 관세 50%와 비함량 관세 10%(+24% 유예중) 및 마약(펜타닐) 관세가 모두 부과되어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美 CBP는 8월 18일부터 철강¹¹⁾, 알루미늄¹²⁾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 40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지정된 품목에는 생활가전인 냉장·냉동고(HS 제8418.10호), 세탁기(HS 제8450.11호), 철강 함량이 높은 건설기계 품목인 엘리베이터(HS 제8428.39호 / HS 제8428.90호)와 작업 트럭(HS 제8427.20호), 그리고 자동차 부품(HS 제8708.99호)과 화장품(HS 3304.99호)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주요 품목** 수출 통계

(단위 : 천 \$, %)



1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5936570: Section 232 Additional Steel Derivative Tariff Inclusion Products」, 2025.08.15.

1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5936615: Section 232 Additional Aluminum Derivative Tariff Inclusion Products」, 2025.08.15.

주요 품목의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 비중은 17.0%, 미국의 對한 수입 비중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전기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건설, 전력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 박(HS 제7410호)은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와 시사점



‘트럼프 관세’가 국가별·품목별 이중 구조로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한-미 FTA 효과가 희석되고 과도한 對미 투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미래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와 반가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의 여파로 중소기업 중심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며, 향후 반도체·의약품·목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對미 수출기업은 성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가 이중 부과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산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국의 관세부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내용	유의 사항
1	관세부과 동향	미국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 자사 물품이 속한 산업군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반가공 구리제품 및 파생상품 그 외 산업 품목 확대 동향 품목별/국가별 관세 변동
2	품목분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관세율 확인 필요 - 자사 물품의 품목분류 확인 - 자사 물품의 부과 관세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준 품목분류 미국 기준 품목분류 - CBP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CBP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에 대한 설명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 - 수출국에서 미국 수입까지의 국제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수수료·경비는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원자재 구매 송장을 기준 비과세 기준액(de minimis) 없음 - 소량의 함유량도 신고필요 알루미늄과 파생상품 -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제련·주조국 미상 신고 시 200% 관세부과 주의
4	원산지 확인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 확인 - 美 CBP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따른 원산지 확인 -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 - CBP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원산지(한국산) 증빙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재료 소싱처별 거래명세서 ② BOM 및 기타 함량 증빙 자료 ③ 제조공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국 이상에서 공정 수행 시, 국가별 공정 증빙 자료 ④ 기타 원산지 증빙 가능 자료

No.	항목	내용	유의 사항
5	관세율 확인 과 총 관세 계산	관세부와 구조 확인 - 기존 관세 + 제232조 품목 관세 + IEEPA 관세 - 품목분류와 원산지 확인을 통해 관세율 계산	• 관세부와 우선순위 확인 예시) 자동차 관세와 철·알 관세 모두 대상인 경우, 자동차 관세만 적용
6	환적 처벌 조항 주의 (신설 조항)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 적발 시 강경 조치 - 적발 시 40% 징벌적 관세 및 기타 벌금 부과 -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거점 활용 차단 필요	•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차단 목적 • 외국산 물품 반입 후 단순 포장 및 가공 되어 실질적변형 없이 환적국을 원산지로 표기할 경우 제재 대상

◎ 자료 출처 : 연구자 작성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 제14326호에서 미국은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ment) 적발 시 40%의 추가 관세와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중국산 물품의 아세안 경유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K-푸드 ‘냉동 김밥’ 사례와 같이 FTA는 여전히 유효한 통상 수단이다. 한국은 ‘FTA 강국’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활용 경험과 원산지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재료·중간재 수입을 다변화하고,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관세’ 시대에 한국 수출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對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 CBP e-Ruling 사전심사 가이드, 미국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과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과 자사 물품 관련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 보고, 검토하여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CBP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등을 적극 활용해 對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TIP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급변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군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발표가 임박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제232조 품목별 관세		IEEPA 국가별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제301조	기본관세 ²⁾ 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 ¹⁾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100% (전기차)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0%		4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① 완성차 조건·상무부승인 대상: 비 미국산 부품만 25% ② 부품 0%											① 완성차 비 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총족	25%											25%
철강·알루미늄	한국·EU·일본·베트남		50%(철)/50%(알)			50%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함량(50%)+펜타닐(2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50%
		USMCA 미총족												
철강·알루미늄·반가공 구리 파생상품	한국·EU·일본		50%(철)/50%(알)/50%(구)		15%	~50% (중국 펜타닐 20% 추가)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국가별 관세 (비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베트남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USMCA 미총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15%	15%	국가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30%								
	베트남				20%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0%								0%
		USMCA 미총족			캐나다 35%	캐나다 35% (에너지 10%, 칼륨 10%)								
					멕시코 25%	멕시코 25% (칼륨 1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2025.08.07)

- 1) 한국·EU·일본은 15% 합의(EU·일본 서면 합의문 발표), 단, 현재 미실행(25% 적용중, 2025.09.08. 기준)
- 2) EU·일본은 MFN 15%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FTA BRIEF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